

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관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19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5월 26일

발 의 자 : 최관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유 용, 김영한, 성백진, 김기대,  
양준욱, 강성언, 박운기, 김종욱,  
김희걸, 김구현, 김혜련, 김인제,  
이승로, 김제리, 이명희, 신건택,  
김기만, 박기열, 김선갑 의원(19명)

## 1. 제안 이유

서울시에서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사용 기간 종료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용권을 반환받고 있으나, 서울시 인수 후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(또는 부대시설)에 대해 일반입찰에 따라 새로이 수허가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고 명도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영주차장 운영 정상화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예상됨

또한,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변경 등 사정 변경 시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(또는 부대시설)로 허용되는 시설물 범위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

이에,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(또는 부대시설)의 사용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

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(사무실 등 포함)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인(법인 포함)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 정상화 및 기존 임차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며,

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 및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해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변경 등에도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사용자 선정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(안 제10조의2제1항)
- 나. 시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자(문서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를 말한다)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(사무실 등 포함)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인(법인 포함)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.(안 제10조의2제2항)
- 다. 다만,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안 제5조제2항 단서)
- 라. 다만,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안 제16조제2항 단서)

### 3. 참고 사항

#### 가. 관련 법령

- 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단서 “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)

- ① 사용자 선정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시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자(문서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를 말한다)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(사무실 등 포함)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인(법인 포함)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.

제1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최관술